

| | |
|--------------|--------------------|
| 의안번호 | 제 280 호 |
| 의 결 연 월 일 | 2015년 월 일 (제 회) |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제 출 자 | 충 청 북 도 지 사 |
| 제출연월일 | 2015년 10월 30일 |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칩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280 |
|----------|-----|

제출연월일 : 2015년 10월 30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청주국제공항의 여객운송은 올해 이용객 200만명 달성이 전망되는 등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화물운송은 침체되어 있는 상황임
- 이에 화물운송 취급 확대를 통한 공항 물류기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국제항공화물 운송시 화물운송 지상조업사, 운송업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더불어 민간차원의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추진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효과적인 공항활성화 방안을 모색,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정지원 대상 확대(안 제1~2조)
 - 기존 항공운송사업자외에 공항활성화 사업자(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기업체) 추가
- 재정지원 범위 확대(안 제3조)
 - 기존 국제항공노선 신규개설, 공항시설 사용외에 국제항공화물 운송 추가
- 재정지원 신청 및 지원금 교부 절차 구체화(안 제6~7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6. 비용추계서 : 붙임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조례”를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항공사업자”를 “항공사업자와 공항활성화 사업자”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사업자”란 「항공법」 제2조제31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을 하는 자(외국인 국제항공사업자를 포함한다)로서 청주국제공항을 발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여 같은 법 제2조제32호부터 제34호까지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공항활성화 사업자”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기업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 범위)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항공사업자와 공항활성화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제항공노선 신규개설
2. 공항시설 사용
3. 국제항공화물 운송
4. 그 밖에 도지사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와 제5조 중 “항공사업자”를 각각 “항공사업자 또는 공항활성화사업자”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지원 신청) ① 제3조제1호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항공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정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운항기간 중 탑승(탑재) 현황
2. 운항기간 중 운항기종 및 공급 좌석(톤)수
3. 운항 사실 기록부
4.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정하는 서류

②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항공사업자 또는 공항활성화 사업자는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4조에 따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 교부) 항공사업자 또는 공항활성화 사업자로부터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지원금을 교부한다.

1.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지원 결정 당시 제4조에 따른 협의 사항 준수 여부를 심사한 결과에 따라 교부한다.
2. 제3조제4호의 경우: 사업 착수 또는 교부 결정 시에 교부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중 “항공사업자”를 각각 “항공사업자 또는 공항 활성화 사업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명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u>이용</u>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제3조에 따라 청주국제공항에 취항하는 <u>항공사업자</u>에 대한 재정지원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편익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항공사업자”라 함은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제3조에 따른 항공사업자(외국인 국제항공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청주국제공항을 발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는 「항공법」 제2조에 따른 정기항공 운송사업자와 「항공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호에 따른 부정기항공 운송사업자를 말한다.</p> <p>제3조(지원 범위) 도지사는 항공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제항공노선 신규개설 2. 공항시설 <u>사용료</u> 3. 그 밖에 도지사가 <u>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 <p>제명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u>활성화를 위한</u> 재정지원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제3조에 따라 청주국제공항에 취항하는 <u>항공사업자와 공항활성화 사업자에</u></p> <p>.....</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항공사업자”란 「항공법」 제2조 제31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을 하는 자(외국인 국제항공사업자를 포함한다)로서 청주국제공항을 발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여 같은 법 제2조제32호부터 제34호까지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공항활성화 사업자”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기업체를 말한다. <p>제3조(지원 범위)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항공사업자와 <u>공항활성화 사업자에게</u>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제항공노선 신규개설 2. 공항시설 <u>사용</u> 3. <u>국제항공화물 운송</u> 4. 그 밖에 도지사가 <u>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 |

| 현행 | 개정안 |
|--|--|
| <p>제4조(지원 결정) 제3조의 지원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u>항공사업자와 협의로 결정할 수 있다.</u></p> | <p>제4조(지원 결정) <u>.....항공사업자 또는 공항활성화 사업자와.....</u></p> |
| <p>제5조(도비 지원) <u>항공사업자에</u> 대한 재정지원에 있어, 시·군에서 재정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에 도비를 지원할 수 있다.</p> | <p>제5조(도비 지원) <u>항공사업자 또는 공항활성화 사업자에</u></p> |
| <p>제6조(지원 신청) 재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u>항공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정지원금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 <p>제6조(지원 신청) ① <u>제3조제1호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항공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정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운항기간 중 탑승(탑재) 현황</u> 2. <u>운항기간 중 운항기종 및 공급 좌석(톤)수</u> 3. <u>운항 사실 기록부</u> 4. <u>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u> 5. <u>그 밖에 도지사가 지정하는 서류</u> <p>② <u>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항공사업자 또는 공항활성화 사업자는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4조에 따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

| 현행 | 개정안 |
|---|---|
| <p>제7조(지원금 교부) <u>항공사업자로부터 재정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u> 이에 대한 심사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지원금을 교부한다.</p> | <p>제7조(지원금 교부) <u>항공사업자 또는 공항활성화 사업자로부터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u>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지원금을 교부한다.</p> <p>1.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지원 결정 당시 제4조에 따른 협의 사항 준수 여부를 심사한 결과에 따라 교부한다.</p> <p>2. 제3조제4호의 경우: 사업 착수 또는 교부 결정 시에 교부한다.</p> |
| <p>제8조(지원금의 반환) 도지사는 지원대상 <u>항공사업자가</u>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p> | <p>제8조(지원금의 반환)<u>항공사업자 또는 공항활성화 사업자가</u>..... </p> |
| <p>제9조(사업자 의무) 재정지원을 받은 <u>항공사업자는</u> 지원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p> | <p>제9조(사업자 의무)<u>항공사업자 또는 공항활성화 사업자는</u>..... </p> |
| <p>제10조(감독)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은 <u>항공사업자에</u> 대하여 지원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 <p>제10조(감독)<u>항공사업자 또는 공항활성화 사업자에</u>..... </p> |

관련법령 발췌

□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운송사업”이란 「항공법」 제2조제31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

제3조(항공운송사업의 조성)

① 정부는 항공운송사업을 하는 자(이하 “항공사업자”라 한다)가 「항공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으로 융자하여 줄 수 있다.

1. 국제항공노선의 신규개발
2. 항공기의 조종사, 정비사 및 무선기술기사의 양성
3. 전쟁·내란·테러 등으로 인한 손실의 발생

② 지방자치단체는 항공운송사업의 진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항공사업자(외국인 국제항공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8조에서 같다)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항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1. “항공운송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32. “국내항공운송사업”이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항을 하는 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

가. 국내 정기편 운항: 국내공항과 국내공항 사이에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인 운항계획에 따라 운항하는 항공기 운항

나. 국내 부정기편 운항: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가목 외의 항공기 운항

33. “국제항공운송사업“이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항을 하는 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

가. 국제 정기편 운항: 국내공항과 외국공항 사이 또는 외국공항과 외국공항 사이에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인 운항계획에 따라 운항하는 항공기 운항

나. 국제 부정기편 운항: 국내공항과 외국공항 사이 또는 외국공항과 외국공항 사이에 이루어지는 가목 외의 항공기 운항

34. “소형항공기운송사업“이란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외의 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

제147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 ① 제112조제1항 및 제1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제1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행을 (이러한 항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대한민국 각 지역 간의 항행을 포함한다)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의 국제항공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운항 횟수 및 사용 항공기의 기종(機種)을 제한하여 사업을 허가할 수 있다.

제112조(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 ①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2조(소형항공운송사업)

- ① 소형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항공기 등록의 제한)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다. 다만,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이 임차하거나 그 밖에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임차한 항공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3.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
5. 외국인이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법인등기부상의 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

제144조(외국항공기의 항행)

- ① 외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제14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이하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 및 제148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운송에 사용하는 항공기는 제외한다〕의 사용자(외국, 외국의 공공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행을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대한민국 밖에서 이륙하여 대한민국에 착륙하는 항행
2. 대한민국에서 이륙하여 대한민국 밖에 착륙하는 항행
3. 대한민국 밖에서 이륙하여 대한민국에 착륙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을 통과하여 대한민국 밖에 착륙하는 항행

제148조(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

- ① 외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는 제외한다)의 사용자는 제14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항행(이러한 항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국내 각 지역 간의 항행을 포함한다)을 할 때 국내에 도착하거나 국내에서 출발하는 여객 또는 화물의 유상 운송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항공법 시행규칙

제14조의2(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의 규모)

법 제2조제32호 및 제3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공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1. 승객의 좌석 수가 51석 이상일 것(화물만을 전용으로 운송하기 위한 항공기는 제외한다)
2. 조종실과 객실 또는 화물칸이 분리된 구조일 것

제15조(부정기편 운항의 구분)

법 제2조제32호나목 및 제33호나목에 따른 국내 및 국제 부정기편 운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지점간운항: 한 지점과 다른 지점 사이에 노선을 정하여 운항하는 것
2. 관광비행: 관광을 목적으로 한 지점을 이륙하여 중간에 착륙하지 아니하고 정해진 노선을 따라 출발지점에 착륙하기 위해 운항하는 것
3. 전세운송: 노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업자와 항공기를 독점하여 이용하려는 이용자 간의 1개의 항공운송계약에 따라 운항하는 것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공항 물류기능 강화 등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비용발생 요인

-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사업 재정지원 대상 및 범위의 확대에 의해 향후 증액 가능성은 있으나, 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즉시 증액 사유는 없음

3. 관련조문

- 안 제1조(목적) : 재정지원 대상에 기존 항공사업자외에 공항 활성화 사업자(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기업체) 추가
- 안 제3조(지원범위) : 기존 국제항공노선 신규개설, 공항시설 사용 외에 국제항공화물 운송 추가

4. 비용 추계 결과

- 가. 재정수반요인 : 현재 지원중인 국제항공노선 개설과 함께 국제항공 화물 운송에 대해 지원
- 나. 추계의 전제 : 추가 증액 없이도 '15년 편성예산 「신규 국제 정기 노선 취항 항공사 재정지원」(연300백만원) 내에서 국제항공화물 운송등을 추진하는 공항활성화 사업자 지원 계획
※ '16년 예산에 동일 사업비로 사업 명칭만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재정지원」으로 변경 반영 예정
- 다. 추 계 결 과 : 현 예산의 범위내에서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지원 가능
- 라. 재원조달 방안 : 도비 100%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 : 천원)

| 구 분 | 1차년도 (2015년) | 2차년도 (2016년) | 3차년도 (2017년) | 4차년도 (2018년) | 5차년도 (2019년) | 계 |
|-----|-----------------|-----------------|-----------------|-----------------|-----------------|-----------|
| 세 출 | 300,000 | 300,000 | 300,000 | 300,000 | 300,000 | 1,500,000 |

6. 작성자 : 관광항공과장 김 대 희